

[별첨]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선출 규정

제정: 2021. 5. 20

개정: 2022. 1. 26

제1조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편, 인터넷 등을 사용한 다양한 투표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추천 및 등록, 선거 운동,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연속 2개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 만 선거권이 있다.
2.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연속 5개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 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5조 (후보 등록)

수석부회장 후보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20인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다.

제6조 (선거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전에 학회 홈페이지 게시와 이메일 발송 으로 수석부회장 선거 사실과 후보 추천을 공고한다.
2. 수석부회장 후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에 확정하여 학회 홈페이지 게시와 이메일 발송을 통해 공고한다.

제7조(선거 운동)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 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 원회에 요청하 여 선거 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보낼 수 있다.

제8조 (당선자 확정)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1.05.20)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제10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 ☐ 회장/감사 후보자 회원 추천 등록 안내 및 추천 기간: 2021년 3월 8일(월)~2021년 4월 12일(월) 00시 까지
 - 웹사이트 안내,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이메일 안내
- ☐ 회장/감사 후보자 이사회 추천 등록 안내 및 추천 기간: 2021년 4월 15일(목)~2021년 5월 17일(수) 00시까지
 - 웹사이트 안내, 이사회 이메일 안내
- ☐ 회장/감사 후보 등록자 명단 최종 안내 및 선거권자 명단 안내: 6월 28일
- ☐ 2021년도 여름정기학술대회 정기총회 안내 및 위임장 발송: 학술대회 일주일 전 안내자료 공고
- ☐ 2021년도 여름정기학술대회: 2021년 8월 25일(수) - 27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 ☐ 회장/감사 선출 : 2021년도 한국질량분석학회 정기총회(8월 26일(목), 17:10~17:40)
- ☐ 당선자 확정: 8월 26일(목), 17:10~17:40

※ 모든 회원이 기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장 선거를 위해 수석부회장 선거 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분들께서는 회원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 주십시오.